

제 767 호
1980. 4. 7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 집: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화 75-7834
인 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851 호: 서울특별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113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지적승인..... 3
제 114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지적승인..... 4
제 115 호: 도시계획(미판지구)정장지적승인..... 5
제 116 호: 도시계획사업(녹지)실시계획인가..... 5
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지적승인..... 8
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 8
제 119 호: 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변경결정..... 10
제 120 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지적승인..... 10

<이년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01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1
	제 105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1
	제 108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완료공고	12
	제 109 호 :	환지계획공람공고	13
	제 110 호 :	직인신조등록공고	13
	제 27 호 (용산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14

규 칙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4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51 호

서울특별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기획관리관, 부위원장은 도로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하수국장, 수도국장, 지하철본부장, 시정연구담당관, 영선과장, 도시계획 1과장, 도시계획 2과장, 구획정리과장, 건축지도과장, 저개발 1과장, 재개발 2과장, 주택공사과장, 도로과장, 도로시설과장, 도로보수과장, 하수시설과장, 치수과장, 기전과장, 급수과장, 수원시설과장, 지하철본부공무과장, 기획조사과장, 건설 1과장, 건설 2과장, 전기과장, 시립운동장 건설본부 공사과장 및 시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제적인 시공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조 (회의) 위원회 또는 개별심의회는 공사주관과장의 설계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하여 소집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13 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349 호 (79.9.24) 로 변경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틀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지하철본부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식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4

서울특별시장

○ 고속철도 (부대시설) 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위 치		폭	연 장	면 적	비 고	
낙성대정차장	봉천동 185 부먹앞		19 m	205 m	6,247 ㎡		
서울대입구	" 398 앞		20	210	4,836		
봉천동	" 339 앞		18	205	4,260		
신림동	신림 1 동 74-38 앞		19	205	5,495		
문래동	구로동 636 번지 앞		21	205	5,455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4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p>			<p>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지 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0.4</p> <p>서울특별시 장</p>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미성국민학교	신림산 122-6 일대		13,547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제지	소로	3 류	6 m	140 m	신림 223-3	신림여중 정문	
기정	"	"	6	120	" 230-1	신림동 224-2	
변경	소로	2 류	8	120	" 230-1	신림동 224-2	복원 확장
신설	"	"	8	150	" 230-10	신림여중 정문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15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정정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57 호 (79.10.30)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540 호 (79.12.31)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미관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지적 승인하였

기대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9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의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4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 (미관지구) 정정 지적 승인조서

구분	종별	연장(m)	면적(㎡)	위치	비고
기정	제 2 층	300	7,200	강동구 송마동 38 광장 ~ 송파동 451 무력	당초 1/5,000
기정	44 층	4,950	118,800	송파동 방로 23, 성내동 방로 22, 풍납대토 34	도면 변경
변경	제 5 층	집 단	1,198,650	강동구 문촌동, 이동, 오금동 일대	1/1,200 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16 호

도시계획사업 (녹지)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74 호 (79.11.17)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고시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 (제 3 한강교 부속 녹지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 . .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32 번 지의 20 필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녹지조성 명칭: 제 3 한강교북측 녹지조성사업</p> <p>3. 사업의 규모 녹지조성 807평 (2,669㎡)</p> <p>4.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p>	<p>5. 사업확수 및 준공 1979.12.10-1980.10.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 의의 권리의 명세: 별첨</p> <p>7. 토지 또는 건설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	---

토 지 조 성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용산구 한남동	432	대	142	432	대	142	성동·금호4가212	이서조
2	"	433	"	155	433	"	155	한남동 433	전규석
3	"	434-1	"	409	434-1	"	409	동대문·보문4가92-8	함선우
4	"	440	"	188	440	"	180	한남동 647-26	이정훈
5	"	441	"	106	441	"	106	강남·논현132-4	유정임
6	"	442-1	"	112	442-1	"	60	한남동 442	최승균
7	"	453-1	"	27	453-1	"	27	한남동 453	박경원
8	"	453-3	"	69	453-3	"	9	"	"
9	"	454	"	109	454	"	109	한남동 647-26	이정훈
10	"	455	"	218	455	"	218	"	"
11	"	457-1	"	242	457-1	"	242	한남동 433	전규석
12	"	457-3	"	9	457-3	"	9	"	"
13	"	458	"	73	458	"	73	한남동 455	김충남
14	"	557-20	"	72	557-20	"	72	한남동 220-29	여문환
15	"	434-2	도	46	434-2	도	46	서울시	
16	"	458-1	"	69	458-1	"	69	"	
17	"	459-1	대	714	459-1	대	340	"	
18	"	455-1	"	149	455-1	도	78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9	용산구한남동	438	대	238	438	대	89	한남동 438	임경석
20	"	436	"	136	436	"	80	" 436	최동식
21	"	422	"	165	422	"	165	" 422	김광수
계				3,448			2,669 (807坪)		

건 물 조 서

연번	원 건물					수용 건물			소유자	
	동명	지번	층별	구조	면적	층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용산구한남동	440	1	목조외집	10	1	목조외집	10	한남동 647-26	이정훈
2	"	440	1	세부외집 (공장)	30.61	1	세부외집 (공장)	30.61	"	"
3	"	441	1	세부외집	13.53	1	세부외집	13.53	한남동 441	유정임
4	"	442-1	1	"	14.94	1	"	14.94	" 442	최용균
5	"	453	1	세부연외조	16.05	1	세부연외조	16.05	" 453	박정원
6	"	454	1	목조외집	10	1	목조외집	10	" 147-26	이정훈
7	"	454	1	"	5	1	"	5	"	"
8	"	455	1	세부외집 (공장)	30	1	세부외집 (공장)	30	"	"
9	"	458	1	세부외집	14.16	1	세부외집	14.16	한남동 125-8	김종남
10	"	434	1	목조외집	47.9	1	목조외집	47.9	" 434-1	함성운
11	"	"	부속	"	27.52	부속	"	27.52	"	"
12	"	"	"	"	4.32	"	"	4.32	"	"
13	"	433	1	"	7.385	1	"	7.385	" 433	전규식

◎ 서울특별시고시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판제도서는 관할구별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4.4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지적승인	중	1	196	20m	530m	담십 463	담십 673	
"	"	3	117	12	530	용두 695	용두 39	
"	"	3	118	12	1100	창동역	창동 41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철도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규모	지적승인내역	비고
경원선	용산역-성북역	18.2km	간송동 673-담십리 464간520	철도연변 정비계획과 관련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9 호(79.6.7)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판제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3.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 망우공동묘지공원 (망우동 산 57번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망우공동묘지순환도로포장공사</p> <p>3. 사업의규모 : 순환도로 콘크리트포장 195.9 a 휴게소, 개석지연상대농지장리</p>	<p>4.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 (동대문구척장)</p> <p>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 인가일 80.4.5</p> <p>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건물 : 2층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p>
---	--

수 용 토 지 지 번 조 서

번호	위 치	지복	지 적	소유자 (등 기 상)	
				주 소	성 명
1	망우동 산 57-1	임야	116,826	경기도	(미 등 기)
2	망우동 산 57-3	"	673,189	"	"
3	연북동 산 1-1	"	201,942	경성청	(서울시)
4	구리읍 교문리 산 84-1	"	158,777	(미 등 기)	(미 등 기)
5	"	"	185,455	"	"

수 용 건 물 조 서

번호	위 치	구 조	용 도	수용명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망우동산 57	부력기화	주거용	17 평	산 57	이 내 영
2	"	"	"	8	"	정 종 부
3	"	"	"	7	"	정 종 덕
4	"	"	"	19	"	김 성 달
5	"	"	"	10	"	송 순 광
6	"	"	"	17	"	엄 충 현
계				78		

◎ 서울특별시고시제 119 호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4.7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성북구 석관동	57,750㎡	건고시 709호
변경	(분뇨처리장)	155일대		(67.10.25) 폐지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0 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두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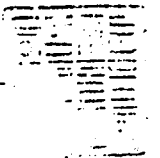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4.7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가스공급설비	성동구 송정동 73 일대	26,450㎡	
변경		성동구 송정동 73 일대	31,640㎡	위치변경(증5,19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인 영		인 영		인 영	
공 인 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분임자살원인	공 인 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분임지출관인	공 인 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분임경리관인
인 영		인 영		인 영	
공 인 명	동작구보건소 한품관리관인	공 인 명	동작구보건소 징수판의인	공 인 명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 분임물품출납원의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10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335 호 (79.7.26)
로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
시계획법제 57 조 2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
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시민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0. 4. 7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개포동산 84
번지일대
- 2. 사업종류및명칭 : 일본인학교

- 3. 도시계획사업시행자 : 서울일본인회
- 4. 사업기간 : 1979.9.22-81.5
- 5. 사업규모 : 16,869㎡
- 6. 인가번호및일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35호 (79. 726)
- 7. 준공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9 호

환지계획공발공고

- 1. 영등계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파트지구내 일부 환지역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요자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통지한다.

1980. 4. 7.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변경내역 -

- 가. 사업명 : 영등계 2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13,617.1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산 2 - 19 외 45 필지

* 도서는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0 호



직인신조등록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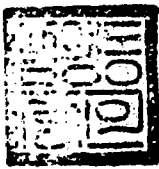







보건사회부소관 서울특별시마포구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직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등록인증하고 서울특별시신조법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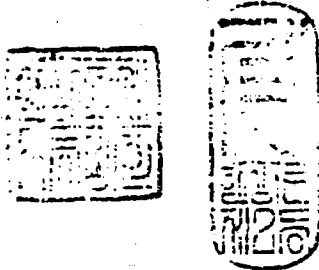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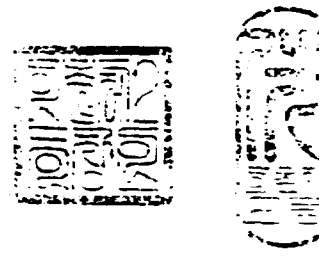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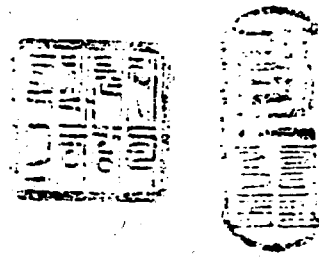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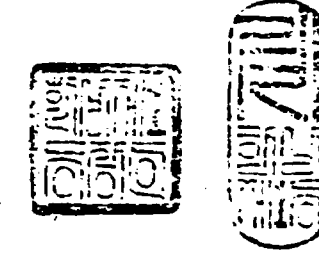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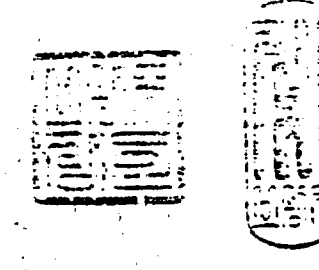
1980. 4. 7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 마포구분임지출관인
마포구분임재무관인
- 2. 사용개시일 : 1980. 4. 14
- 3. 직인인명 : 다음

인 영		인 영	
공인명	마포구분임재무관인	공인명	마포구분임지출관인

<p>○ 용산구 공고제 27 호</p> <p>공인개각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6조규정에 의거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사용함에 따라 동조례제 9조규정에 의하여 다 술과 같이 공고한다.</p> <p>1980. 4. 10 용 산 구 청 장</p>		<p>1. 개각종명</p> <p>남영동, 청파제 1동, 원효제 2동, 용문동, 안강로제 2동, 이촌제 2동, 이백원제 2동, 안남제 1동, 보광동</p> <p>2. 사용일시</p> <p>1980. 4. 15. 09:00</p> <p>3. 공인의인영 : 다음</p>	
공 인 의 인 영		공 인 의 인 영	
인 영	 	인 영	 
공인명	남영동장인 및 제인	공인명	청파제 1동장인 및 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원효로제 2동장인 및 제인	공인명	용문동장인 및 제인

인 영		인 영	
부 영인	한강로제 2 동장인 및 계인	공 인 영	이준제 2 동장인 및 계인
인 영		인 영	
부 영인	이태원제 2 동장인 및 계인	부 영인	안남제 1 동장인 및 계인
인 영		인 영	
부 영인	보광동장인 및 계인	부 영인	